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법」('21.00.00. 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등의 관할범위 명확화(안 제1조의4)

임용권자 범위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가됨에 따라 징계등의 관할 범위에 지방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까지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 본문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를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무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4제2항 중 “제1위원회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위원회에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를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의2와 같다.”로 한다.

제1조의4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①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인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 의 징계 또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 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단서 신설>	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무 원의 ----- ----- ----- ----- ----- ----- . 이 경우 징계 또는 징 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 다)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구체 적인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1. ~ 10. (생략)	1. ~ 10. (삭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 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 우 제1위원회에서는 제1항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등 사 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위원 회에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 호까지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 ----- --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에 대 한 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생략)	③ (삭제)
④ (생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생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관할(제1조의4 제1항 관련)

위원회	징계등의 관할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가. 시·도지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소속의 5급이상공무원등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나. 시·도지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다. 시·도지사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경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 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다만, 시·군·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 마.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이 경우 관련된 모든 공무원이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소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도 소속 기관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가 관할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징계등 사건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시장·군수 ·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	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의 경징계등 사건. 다만, 시·군·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군·구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군·구 소속 기관의 장이 그가 관할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징계등 사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시·도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가. 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 소속 5급이상공무원등의 징계등 사건 나. 시·도의회 의장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징계등 사건 다. 시·군·구의회의 의장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라.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이 경우 관련된 모든 공무원이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의 소속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 시·군·구의회의 의장이 그가 관할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도의회 의장 소속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징계등 사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시·군·구 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가. 시·군·구의회의 의장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의 경징계등 사건
비고 1. “시·도지사”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2. “구”란 자치구를 말하며, “구청장”이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5급이상공무원등”이란 5급 이상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 및 지도관,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4. “6급이하공무원등”이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연구사 및 지도사,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관할(제1조의4 제2항 관련)

위원회	징계등의 관할
제1위원회	가. 시·도지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소속의 5급이상공무원등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나. 시·도지사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 다. 제2위원회 관할 사건으로서 제2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제1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징계등 사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제2위원회	가. 시·도지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경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도 소속 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다.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다만, 시·군·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 라.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이 경우 관련된 모든 공무원이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소속인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도 소속 기관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가 관할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징계등 사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비고

1. “시·도지사”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2. “구”란 자치구를 말하며, “구청장”이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5급이상공무원등”이란 5급 이상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 및 지도관,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4. “6급이하공무원등”이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연구사 및 지도사,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